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8. 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8. 22.

다. 상정일자: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2.8.30.)

상정, 심사, 보류

제257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2.9.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최종익】

가. 제안이유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부구청장 직속 : 1담당관 1단 7팀 → 2담당관 8팀

(△1단, +1담당관, +1팀)

< 현 행 >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4팀		3팀	
감조민 원계	사소통 사심사	1번가 협치지 구정연 구	지원 구

< 개 편 안 >

(※ 부구청장 직속 부서 건제순 조정)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4팀		4팀	
새마포 새로운 더좋은 마포 법무	기획 재정 국 기 획 예 산 과	청렴 감사 조 민 원 관 리 계 약 심 사	사 리 심 사

- 부서 폐지 : 마포1번가연구단
- 부서 신설 : 새마포담당관
- 팀 폐지 : 마포1번가 연구단 1번가팀, 협치지원팀, 구정연구팀
- 팀 신설 : 새로운마포팀, 더좋은마포팀
- 팀 이동 : (기획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새마포담당관
(법무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새마포담당관
- 팀 명칭변경 : 기획팀 → 새마포기획팀, 감사팀 → 청렴감사팀
민원소통팀 → 민원관리팀

□ 행정지원국 : 6과 24팀 → 5과 19팀 (△1과, △5팀)

< 현 행 >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4팀		5팀		3팀		4팀		4팀		4팀	
총인 내력 개협 외	무사 발력	자치 행 정 지 원 부 사	마을 주민 방 사	행 정 지 원 부 사	언론 홍보 기 미 디 어	청소 행 정 지 원 부 사	정 용 결 산 실	민 원 총 관 리 부 서	민 원 처 리 부 서	정 전 정 영	정 보 기 획 영 신 부 서

< 개 편 안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구민안전과		민원여권과	
4팀		4팀		3팀		4팀		4팀	
행 정 인 교 청	지 역 후 생 관 리	동 자 치 행 정 지 원 부 사	행 정 지 원 부 사	언 론 홍 보 기 미 디 어 채 널	안 전 총 관 리 부 서	안 중 대 재 해 예 방 정 비 부 서	민 원 행 정 지 원 부 서	민 원 처 리 부 서	민 원 총 관 리 부 서

— < 개 편 안 > —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4팀	5팀	4팀	3팀	4팀	4팀
생활복지기획 통합돌봄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기초보장 통합조사1 통합조사2 자활의료보장 주거복지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 어르신돌봄 어르신지원	장애인정책 장애인시설 장애인자립	양성평등정책 어린이집사업 어린이집지원 1인가구지원	아동친화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청소년지원

- 국 명칭 변경 : 복지교육국 → 약자와동행국
- 부서 이동 : 교육지원과 「관광경제국」으로 이동
- 부서 분리 : 노인장애인과 →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 부서 명칭변경 : 복지정책과 → 주민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 아동청소년과
- 팀 신설 :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지원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시설팀
- 팀 분리 : 청년청소년팀 → 청년지원팀, 청소년지원팀
- 팀 이동 : (노인복지팀, 노인돌봄팀, 노인시설팀) 노인장애인과 →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자립팀)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동행과
(청년지원팀) 아동청소년과 → 관광경제국 좋은일자리과
- 팀 명칭변경 : 복지기획팀 → 생활복지기획팀, 돌봄지원팀 → 통합돌봄팀
복지자원팀 → 복지자원관리팀, 희망복지팀 → 희망복지지원팀
마포하우징팀 → 주거복지팀, 노인복지팀 → 어르신정책팀
노인시설팀 → 어르신시설팀, 노인돌봄팀 → 어르신돌봄팀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정책팀, 여성정책팀 → 양성평등정책팀
보육행정팀 → 어린이집사업팀,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지원팀
아동돌봄팀 → 아동친화팀, 출산다문화팀 → 1인가구지원팀

□ 관광경제국 : 5과 16팀 → 6과 21팀 (+1과, +5팀)

— < 현 행 > —

관 광 과	일자리지원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생활체육과
3팀	3팀	3팀	4팀	3팀
관광기획 관광사업 관광마케팅	일자리기획 고용안전 사회적경제	문화예술기획 문화사업 문화시설	지역경제 시장지원 생활경제 동물보호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 개 편 안 ▶

(※ 관광경제국 부서 건제순 및 문화누리과 팀 건제순 조정)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누리과	일자리청년과	체육진흥과	교육정책과
3팀	4팀	3팀	4팀	3팀	4팀
관광정책 관광산업 마포순환열차	경제총괄 시장활성화 생활경제 동물정책	문화누리기획 문화시설 문화사업	일자리지원 일자리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	교육정책 평생교육 교육협력 도서관진흥

- 국 명칭 변경 : 관광일자리국 → 관광경제국
- 부서 이동 : 교육지원과 「관광경제국」으로 이동
- 부서 명칭변경 : 관광과 →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 문화누리과,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청년과**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 교육정책과
- 팀 폐지 :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팀 신설 : 관광정책과 마포순환열차팀
- 팀 분리 : 일자리기획팀 → 일자리지원팀, 일자리사업팀
- 팀 이동 : (청년지원팀) 약자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 일자리청년과
(고용안전팀) 일자리청년과 →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교육센터팀, 도서관정책팀) 마포중앙도서관 → 교육지원과
- 팀 통합 : 교육정책과 교육혁신팀+교육센터팀 → 교육협력팀
- 팀 명칭변경 : 관광기획팀 → 관광정책팀, 관광사업팀 → 관광산업팀
지역경제팀 → 경제총괄팀, 시장지원팀 → 시장활성화팀
동물보호팀 → 동물정책팀, 문화예술기획팀 → 문화누리기획팀
일자리기획팀 → 일자리지원팀, 체육진흥팀 → 체육정책팀
교육기획팀 → 교육정책팀, 도서관정책팀 → 도서관진흥팀
- 재정관리국 : 6과 25팀 → 6과 26팀 (+1팀)

〈 현 행 〉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4팀	3팀	5팀	4팀	4팀	5팀
기예법경 영통	재산관 계지리 약출	세입총 38세금징 38세금징 세외징 교통체	재산세 재산세 12인 표	자동차 주민세 지방소득 지방소득	토지행 지적관 지가조 부동산 도로명

〈 개 편 안 〉

(※ 지방소득세과 팀 건제 순 조정)

디지털재정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5팀	3팀	5팀	4팀	4팀	5팀
예산 공기 전산 정보 운영	재산관 계지리 약출	세입총 38세금징 38세금징 세외징 교통체	재산세 재산세 12인 표	지방소득 지방소득 주민세 자동차	부동산행 지적관 지가조 부동산 도로명

- 국 명칭 변경 : 기획재정국 → 재정관리국
- 부서 명칭변경 : 기획예산과 → 디지털재정과, 세무1과 → 재산세과
세무2과 → 지방소득세과
- 팀 이동 : (기획팀, 법무팀) 디지털재정과 → 새마포담당관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 영상정보팀) 행정관리국 전산정보과 → 디지털재정과
- 팀 명칭변경 : 경영통계팀 → 공기업팀, 토지행정팀 → 부동산행정팀
부동산관리팀 → 부동산거래관리팀

□ 도시환경국 : 6과 26팀(변동없음)

〈 현 행 〉

주 택 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4팀	5팀	5팀	4팀	4팀	4팀
주 택 관 임 대 사 재 개 발 개 발 건 축	도 시 계 도 시 개 지 구 단 도 시 재 전 략 사	건 축 관 건 축 민 건 축 민 공 공 건 공 공 디	재 난 안 광 고 전 건 축 물 건 축 물 건 축 안	환 경 행 환 경 지 막 은 대 에 너 지	공 원 기 500만 조 루 자 연 생

< 개 편 안 >

(※ 도시환경국 부서 건제 순 조정)

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5팀	4팀	5팀	5팀	4팀	3팀
공동주택지원 임대사업 재개발지원 재건축지원 보상주택	청소행정 재활용관리 지역청결 시설장비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 역세권개발 전략사업	건축계획 건축지도 건축지원 건축운영 건축안전센터	환경정책 환경지도 대기질관리 에너지관리	공원정원 가로정원 자연생태

- 부서 이동 : 도시안전과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국」으로 이동
- 부서 명칭변경 : 주택과 → 주택상생과,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건축과 → 건축지원과, 환경과 → 맑은환경과
- 팀 이동 : (건축안전센터팀)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 건축지원과
- 팀 폐지 : 건축지원과 공공디자인팀, 공원녹지과 500만그루조성팀
- 팀 신설 : 주택상생과 보상주택팀
- 팀 명칭변경 : 주택관리팀 → 공동주택지원팀, 재개발팀 → 재개발지원팀
 재건축팀 → 재건축지원팀, 자원재활용팀 → 재활용관리팀
 청소시설팀 → 시설장비팀, 지구단위팀 → 도시관리팀
 도시재생팀 → 역세권개발팀, 건축관리팀 → 건축계획팀
 건축민원1팀 → 건축지도팀, 건축민원2팀 → 건축운영팀
 환경행정팀 → 환경정책팀, 맑은대기팀 → 대기질관리팀
 공원기획팀 → 공원팀, 조경팀 → 가로정원팀

교통건설국 : 5과 21팀 → 5과 22팀 (+1팀)

< 현 행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5팀	4팀	3팀	5팀	4팀
교통관리 주차장시설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교통개선	주차단속 주차장관리 주차세입 운수관리	건설행정보 건설정보 가로정비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관리 도로안전 도로조명	하수처리 하수처리 하수처리 하수처리 하수처리

< 개 편 안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행행정과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5팀	4팀	4팀	5팀	4팀
교통관리 주차장조성 자동차등록비 자동차정비 교통개선	주차단속 주차장관리 주차세입 운수질서관리	보행행정 보상건설 가로정비 광고물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관리 지하안전굴착 도로조명	하치기하 수수전천

- 부서 명칭변경 :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 보행행정과
도로과 → 도로개선과, 치수과 → 물관리과
- 팀 이동 : (광고물팀)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 보행행정과
- 팀 명칭변경 : 주차장시설팀 → 주차장조성팀, 운수관리팀 → 운수질서관리팀
건설행정팀 → 보행행정팀, 건설보상팀 → 보상건설팀

□ 보건소 : 4과 16팀 (변동없음)

< 현 행 >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4팀	4팀	4팀	4팀
보건기획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건강지원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지도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모자보건 건강생활	의약 약검 보건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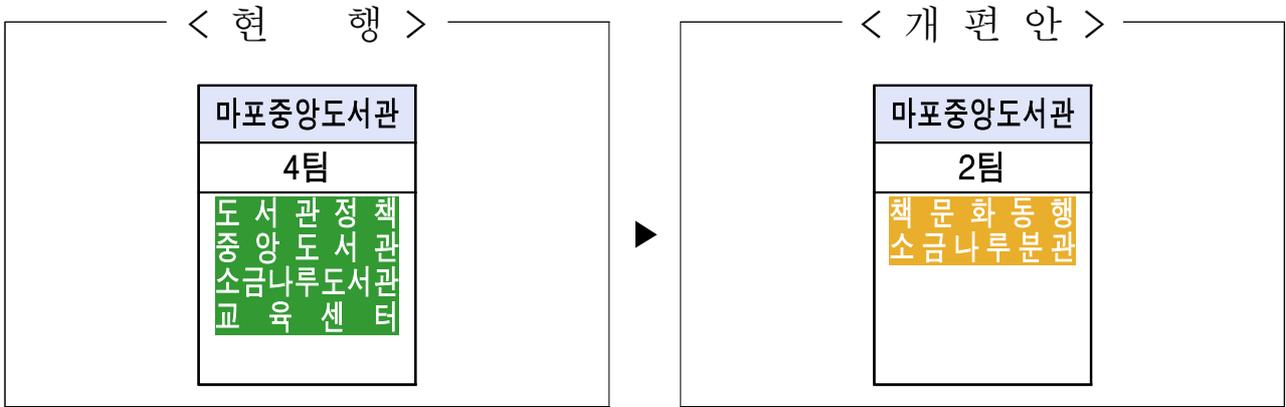
< 개 편 안 >

(※건강동행과 팀 건제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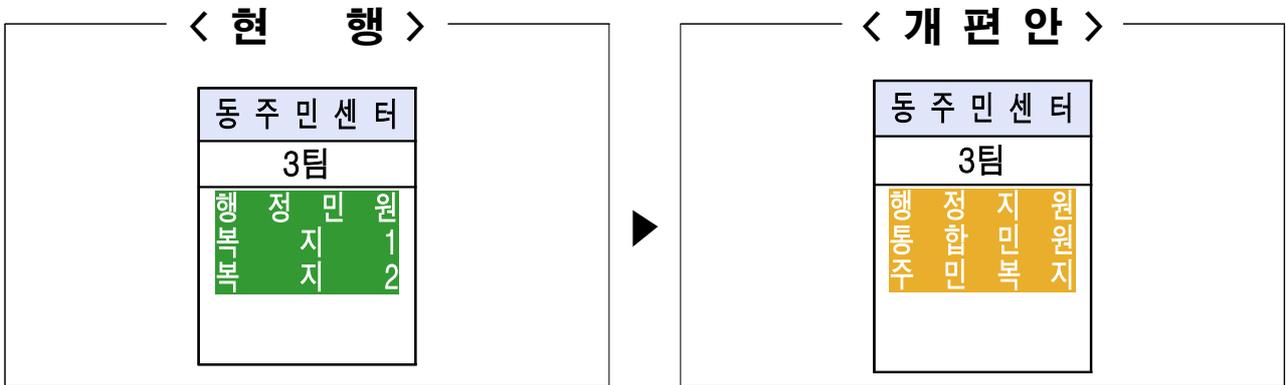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동행과	의약과
4팀	4팀	4팀	4팀
보건기획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마음건강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관리 공중위생	행정 안전 방문보건 건강생활	햇빛센터 의약 약검 보건지소

- 부서 명칭변경 : 건강증진과 → 건강동행과
- 팀 명칭변경 : 건강지원팀 → 마음건강팀, 식품위생팀 → 식품행정팀
위생지도팀 → 위생관리팀, 모자보건팀 → 햇빛센터팀

□ 사업소 : 4팀 → 2팀 (△2팀)



- 팀 이동 : (도서관정책팀, 교육센터팀) 마포중앙도서관 → 관광경제국 교육정책과
- 팀 명칭변경 : 중앙도서관팀 → 책문화동행팀, 소금나루도서관팀 → 소금나루분관팀
- 동주민센터 : 16동 48팀 (변동없음)



- 팀 분리 : 행정민원팀 → 행정지원팀, 통합민원팀
- 팀 통합 : 통합민원팀+복지2팀(일부) → 통합민원팀
복지1팀+복지2팀(일부) → 주민복지팀
- 통합민원팀 분리, 보편적 복지민원 일부 업무 통합민원과 통합 하여 동주민센터 팀 전면 개편 예정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의 조직 개편 목표를 살펴보면
민선8기 ‘약자와 동행’ 구정철학을 반영한 행정조직 재설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기능 재편,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연계하고 성공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재정비하여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조직 개편 개편방향은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 조직 강화·확대/ ‘약자와동행국’ 으로 명칭 변경 및 건제순 조정으로 상징성 부여/ ‘어르신동행과’ 와 ‘장애인동행과를 분리·신설하여 전문성 강화/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개편/
- 구정방향 나침반 및 정책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새마포담당관’ 신설/ 공약사업 추진 및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광정책과’ 재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내 주민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주택팀’ 신설하고,
- 흩어져있는 주요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기능 정비/교육·도서관사업 연계 및 교육정책 일원화를 위한 팀 이동·재편/ 청년과 청소년 업무를 분리하고 각각의 업무를 총괄하는 ‘청년지원팀·청소년지원팀’ 신설/ 출산장려와 모자보건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햇빛센터팀’ 신설하는 등
- 부서 내 업무 협업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 재편하여 중대재해, 민방위 등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구민안전과’ 로 변경 및 국 이동/ 건축물 안전·지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건축안전센터팀’ 부서 이동/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관련업무 협업을 위한 ‘광고물팀’ 부서 이동하고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통폐합 추진/ 협치 및 주민참여예산 업무축소에 따른 업무이관·주관부서 변경/ 500만그루 조성사업 축소 및 기능이 유사한 ‘조경팀’ 과 업무통합/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정보과 폐지 및 주무과로 업무 재편/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및 복지업무 일원화를 위한 팀 개편을 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를 상징하는 부서·팀 명칭으로 재조정하였음.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별표 1 ~ 8참조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기능 재조정을 실시하고, 기존 6국 1담당관 1단 34과 144팀에서 6국 2담당관 34과 146팀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4팀에서 2팀, 국개편 4국 명칭변경, 부서개편 신설1개, 분리1개, 폐지2개, 명칭변경24개, 팀신설6개, 분리4개, 통합4개, 폐지6개, 부서간 팀이동 17개를 재조정과 「지방자치법」이 2022. 1. 13.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상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 조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것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 사료됨.

- 중대재해, 민방위 등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구민안전과’ 로의 변경은 안전 사고는 구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업무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지원국으로 이동배치한 점,

‘어르신동행과’ 와 ‘장애인동행과를 분리·신설하여 각각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과 추진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

500만 그루 조성사업을 축소하여 가로정원팀으로 업무통합 및 명칭변경으로 새로운 나무식재보다 기존 수목관리를 통한 장기적 기후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줄일 수 있는 실효성을 마련한 점,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및 복지업무 일원화를 위한 팀개편으로 복지업무의 팀별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조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한 적절한 팀개편이라 판단됨.

- 다만, 약자와동행국 신설에 따른 국 명칭에서 약자라는 단어가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의견을 통해 보편적인 용어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경제국에 교육정책과의 배치는 마포구 의회가 관장하는 행정,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한쪽 위원회로 특정부서의 쏠림현상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볼 때 교육정책과의 국 배치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의 명칭 변경과 도시환경국으로 이동한 개편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보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국가정책의 방향과 부합되지만 동 주민센터의 청소민원이 빈번히 발생한 점을 비추어볼 때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이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조직의 자체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점과 제2항에 국이나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팀 단위의 명칭은 집행부 정책의 행정방향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지만 구민이 알기 쉬운 보편적 용어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행정기구 개편 후 사후조치가 늦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 청사 주변 안내표시, 공사현장 표기 등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업무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별표 1] 조직개편 총괄

구분	본청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정원
현재	6국 1담당관 1단 34과 144팀	1소 4과 16팀	1소 4팀	1사무국 4전문위원 4팀	16동 48팀	1,448
개편안	6국 2담당관 34과 146팀	1소 4과 16팀	1소 2팀	1사무국 4전문위원 4팀	16동 48팀	1,448
증·감	△1단, +1담당관, +2팀	-	△2팀	-	-	-

※ [별표 2] 국 개편 : : 4국 명칭변경 및 기능 강화, 편제 조정

현행	개편안	사유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국	조직 전체 행정업무 지원에 방점을 두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명칭변경
복지교육국	약자와동행국	구정철학 및 복지분야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명칭 변경
관광일자리국	관광경제국	관광산업 경쟁력 및 경제분야 강화를 표현하기 위한 명칭변경
기획재정국	재정관리국	기획업무 이관을 반영하고 구 재정업무 총괄을 명시하기 위한 명칭변경

※ [별표 3] 국간 부서 이동 : 3과

부 서	국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청소행정과	행정관리국	도시환경국	업무 성격에 따라 도시환경국 이관
교육지원과	복지교육국	관광경제국	국가 균형을 유지하고 도서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간 부서 이동
도시안전과	도시환경국	행정지원국	긴급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간 부서 이동

※[별표 4] 부서 개편 : 신설 1, 분리 1, 폐지 2, 명칭변경 24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신설	-	새 마 포 담 당 관	주요사업 기획·조정 기능 등 부여 및 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분리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기존 노인장애인과 업무과중 해소 및 복지 수요별 전문성 강화
폐지	마 포 1 번 가 연 구 단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폐지 및 업무 재배치
	전 산 정 보 과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폐지 및 주무부서로 업무 재배치
명칭 변경	총 무 과	행 정 지 원 과	행정업무 지원에 방점을 두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명칭 변경(노조 요청사항)
	홍 보 과	홍보미디어과	행정기관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반영
	청 소 행 정 과	자 원 순 환 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의 사업목표 및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복 지 정 책 과	주민생활복지과	저소득 주민계층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미를 표명
	여 성 가 족 과	가족행복지원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과 양성평등을 내포하는 명칭으로 변경
	아 동 청 년 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업무 이관에 따라 주요사업 지원대상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교육지원과	교육정책과	도서관사업을 포함하여 교육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의미를 표명
	관광과	관광정책과	공약사업 추진 등 관광정책의 강화 및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함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청년과	양질의 좋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문화예술과	문화누리과	모든 구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과	경제분야에 대한 적극적 행정기능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
	생활체육과	체육진흥과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사업 전반에 대한 진흥을 위한 명칭 변경
	기획예산과	디지털재정과	기획·법무 업무의 다른 부서 이관 및 전산 업무 편입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 1과	재산세과	부서업무에 대한 구민들의 직관적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세무 2과	지방소득세과	부서업무에 대한 구민들의 직관적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주택과	주택상생과	구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 표명
	건축과	건축지원과	구민을 지원하는 의미의 건축업무 추진 표현
	도시안전과	구민안전과	어떤 상황에서도 마포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
	환경과	맑은환경과	환경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맑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 표명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과	부서업무에 대한 구민의 직관적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건설관리과	보행행정과	부서의 업무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도로과	도로개선과	도로계획 및 보도관리 등 부서업무 특성을 고려한 명칭 변경
	치수과	물관리과	해당 부서의 전반적 업무 표현 및 서울시 직제를 고려한 명칭 변경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건강증진과	건강동행과	모든 구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구가 동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함

※ [별표 5] 팀 신설 및 폐지 : 신설 6, 분리 4, 통합 4, 폐지 6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신설	-	새로운마포	구정방향 설정, 공약사업 및 구민 밀착사업 발굴·기획을 추진하기 위한 팀 신설
	-	더좋은마포	주요사업 추진상황 분석 및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팀 신설
	-	어르신지원	어르신정책 사업을 세분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팀 신설
	-	장애인시설	장애인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업무를 분리하여 팀 신설
	-	마포순환열차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	보상주택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분리	총무	행정지원 청사관리	직원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팀 분리
	자치행정	동행정 동청사관리	동청사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노후화·복합화에 따라 전문관리를 위한 팀 분리
	청년청소년	청년지원 청소년지원	청년·청소년 업무증가에 따라 업무를 분리하여 대상자별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
	일자리기획	일자리지원 일자리사업	일자리기획팀 업무를 일자리사업 주체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
통합	인력개발	교육후생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팀 통·폐합
	대외협력		
	마을자치	자치협력	행정환경 변화 및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통·폐합
	주민협력		
	전산운영	전산운영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팀 통폐합
	정보기획		
교육혁신	교육협력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가 밀접한 팀 이관·통합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교 육 센 터		
폐지	1 번 가	-	마포1번가연구단 폐지에 따른 팀 폐지
	협 치 지 원	-	마포1번가연구단 폐지에 따른 팀 폐지
	구 정 연 구	-	마포1번가연구단 폐지에 따른 팀 폐지
	관 광 마 케 팅	-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 재배치 및 팀 폐지
	공 공 디 자 인	-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 재배치 및 팀 폐지
	500만그루조성	-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팀 통폐합

※ [별표 6] 부서 간 팀 이동 : 17팀

팀	소속 부서		사유
	현행	개편안	
기획 법무	기 획 예 산 과	새마포담당관	주요사업 기획·조정·법적검토 등을 담당하는새마포담당관 신설
전산운영 정보통신 영상정보	전 산 정 보 과	디지털재정과	전산정보과 폐지 및 업무추진 효율성을 위하여 주무부서로 편입
민방위 고용안전	자 치 행 정 과	구 민 안 전 과	안전 전담부서 개편에 따른 팀 재배치
노인복지 노인돌봄 노인시설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동행과	부서 분리·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에 팀 배치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동행과	부서 분리·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에 팀 배치
청년지원	아 동 청 년	일자리청년과	청년·청소년 업무 증가에 따른 팀 분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로 팀 이동
도서관정책 교육센터	마포중앙도서관	교 육 정 책 과	교육부서에서 도서관정책 및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 이동

팀	소속 부서		사유
	현행	개편안	
건축안전센터	도시안전과	건축과	부서 내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로 팀 이동
광고물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부서 내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로 팀 이동

※ [별표 7] 국·부서간 업무이동(팀 이관 제외)

부서		이관업무
현행	개편안	
복지교육국	관광경제국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마포1번가연구단	새마포담당관	정책실명제, 제안제도, 구정정책 연구기획 등 업무
	자치행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협치) 관련 업무
	디지털재정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업무
총무과	새마포담당관	구의회 협력 관련 업무
일자리지원과	구민안전과	중대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여성가족과	건강동행과	출산장려 및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햇빛센터팀)
건축과	보행행정과	간판개선사업 업무(광고물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회 관련 업무

※ [별표 8] 팀 명칭 변경 : 63팀

부서명	현행	개편안	부서명	현행	개편안
새마포담당관	기획	새마포기획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체육정책
감사담당관	감사	청렴감사	교육정책과	교육기획	교육정책
	민원소통	민원관리		도서관정책	도서관진흥
행정지원과	총무	행정지원		디지털재정과	경영통계
	인사	인사혁신	부동산정보과	토지행정	부동산행정
	인력개발	교육후생			

부서 명	현행	개편안	부서 명	현행	개편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동 행정		부동산관리	부동산거래관리
홍보미디어과	홍보기획	홍보		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
	뉴미디어	미디어채널			
구민안전과	재난안전	안전총괄	주택상생과	재개발	재개발지원
	고용안전	중대재해예방			
민원여권과	민원총괄	민원행정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	재활용관리
주민생활복지과	복지기획	생활복지기획		청소시설	시설장비
	돌봄지원	통합돌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도시관리
	복지자원	복지자원관리		도시재생	역세권개발
	희망복지	희망복지지원	건축관리	건축계획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	주거복지	건축지원과	건축민원1	건축지도
어르신동행과	노인복지	어르신정책		건축민원2	건축운영
	노인시설	어르신시설	맑은환경과	환경행정	환경정책
	노인돌봄	어르신돌봄		맑은대기	대기질관리
장애인동행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정책	공원녹지과	공원기획	공원
가족행복지원과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조경	가로정원
	보육행정	어린이집사업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	주차장조성
	보육지원	어린이집지원	주차관리과	운수관리	운수질서관리
	출산다문화	1인가구지원	보행행정과	건설행정	보행행정
아동청소년과	아동돌봄	아동친화		건설보상	보상건설
관광정책과	관광기획	관광정책	보건행정과	건강지원	마음건강
	관광사업	관광산업		위생과	식품위생
경제진흥과	지역경제	경제총괄			위생지도

부서 명	현행	개편안	부서 명	현행	개편안
	시 장 지 원	시 장 활 성 화	건 강 동 행 과	모 자 보 건	햇 빛 센 터
	동 물 보 호	동 물 정 책	마포중앙도서관	중 앙 도 서 관	책 문 화 동 행
문 화 누 리 과	문화예술기획	문화누리기획		소금나루도서관	소금나루분관
일 자리 청 년 과	일 자 리 기 획	일 자 리 지 원			

※ [별표 9]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 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시·군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 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

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2-66관련
----------	---------

발의년월일 : 2022. 9. .

발 의 자 : 신중갑

1. 수정이유

차별적·부정적 명칭을 보편적인 용어로 순화하고 각 부서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

2. 수정 주요내용

안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 약자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약자와동행국)”을“(복지동행국)”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복지동행국에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를 둔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약자와동행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항 제7호를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항 제8호를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을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
일자리청년과、체육진흥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
안, 영상정보 운영、관리”를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
보안”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법 제127조
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10월 7일”로,
안 부칙 제4조 제5호、제13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3호、
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제32
호、제33호、제36호、제37호、제38호、제40호 중 “약자와동행국장”
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조 제20호、제27호、제34호、제35호、제39호 중 “관광경제국
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에 나목 및 다목
중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를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관광과”
를 “관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1호
부터 제73호까지를 같은 조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로 수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 약자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지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약자와동행국)”을 “(복지동행국)”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복지동행국에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를 둔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약자와동행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항 제7호를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항 제8호를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을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청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관리”를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10월 7일”로,

안 부칙 제4조 제5호、제13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제32호、제33호、제36호、제37호、제38호、제40호 중 “약자와동행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조 제20호、제27호、제34호、제35호、제39호 중 “관광경제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에 나목 및 다목 중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를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1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같은 조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제1조(목적) 이 조</u> <u>레는 「지방자치</u> <u>법」 제112조부터</u> <u>제 120조까지와</u> <u>「지방자치단체의</u> <u>행정기구와 정원</u> <u>기준 등에 관한 규</u> <u>정」 제5조부터 제</u> <u>8조까지 및 제13조</u> <u>에 따라 서울특별</u> <u>시 마포구에 두는</u> <u>행정기구와 소속</u> <u>행정기관의 설치</u> <u>등 조직과 분장사</u> <u>무의 대강을 규정</u> <u>함을 목적으로 한</u> <u>다.</u></p> <p>제3조(국 및 담당관 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행정 관리국, 기획재정 국, 관광일자리 국, 복지교육국,</p>	<p><u>제1조(목적) 이 조</u> <u>레는 「지방자치법」 제125</u> <u>조부터 제134조까지와</u> <u>「지방자치단체의 행</u> <u>정기구와 정원기준 등</u> <u>에 관한 규정」 제13</u> <u>조에서 위임된 사항과</u> <u>그 시행에 필요한 사</u> <u>항을 규정함을 목적으</u> <u>로 한다.</u></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행정 지원국, 약자와동행 국, 관광경제국, 재정 관리국----- -----.</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행정 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 국----- -----.</p>

도시환경국, 교통
건설국을 둔다.

② 부구청장 소속
으로 감사담당관과
마포1번가연구단
을 두고, 감사담당
관은 감사·조사·
민원소통·심사·
환경순찰 등을, 마
포1번가연구단은
소통·협치·구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자치행정
과·홍보과·청소
행정과·민원여권
과·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
의 분장 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구청사
관리, 인사·조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새마포담당관과 감사
담당관을 두고, 새마
포담당관은 구정 기획
·조정·심사분석·의
회협력·공약 사업 관
리·구민소통·법제심
사 및 송무 등을, 감사
담당관은 감사·조사
·민원관리·심사·환
경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
원과·자치행정과·홍
보미디어과·구민안전
과·민원여권과-----
-.

② 행정지원국장-----

-.

1. -----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행정지원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개정안과 같음)

직,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동청사 관리, 행정구역 조정,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구정홍보, 언론 보도, 뉴미디어에 관한 사항

4.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후생복지, -----

2. -----

----- 지
원-----

3. -----
미디어-----

4.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정보기획, 전산 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 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약자와동행국) ①

약자와동행국에 주민 생활복지과·생활보장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약자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복지육구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5조(복지동행국) ①

복지동행국에 -----

-----아동청소년과

· 교육정책과-----.

② 복지동행국장-----

----- .

1. (개정안과 같음)

<u>원, 지역보호체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u>	2. (개정안과 같음)
2. <u>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u>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3. <u>노인복지 시책 추진 및 노인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6. (개정안과 같음)
4. <u>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7. <u>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
5. <u>양성평등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u>	8. <u>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u>
6. <u>아동복지,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신 설>

제5조(기 획재정국)

① 기 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재무과·징수과·세무1과·세무2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 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 편성·배정·교부,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지방공기업, 법제심사 및 송무, 통계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제6조(관 광일자리

국) ① 관 광일자리국에 관광과·일

제7조(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에 디지털재정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부동산정보과

--.

② 재정관리국장

-.

1. 예산 -----

---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 정보 운영·관리 ---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관 광경제국) ①

관 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

제7조(재정관리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예산 -----

---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

2. ~ 4. (개정안과 같음)

제6조(관 광경제국) ①

관 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

자리지원과 · 문화예술포 · 지역경제과 · 생활체육과를 둔다.

② 관광일자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기획, 관광사업,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진흥, 체육시설 설치 ·

화누리과 · 일자리청년과 · 체육진흥과 · 교육정책과-----
-----.

② 관광경제국장-----

-----.

1. 관광정책, 관광산업,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
--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
3. (현행과 같음)
2. ----- 전통시장 · 상점가 · 소상공인 -----

5. ----- 생활체육시설 -----

화예술과 · 일자리청년과 · 체육진흥과-----
-----.

② -----

-----.

1.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운영·관리에 관
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생활
보장과·노인장애
인과·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교
육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
의 분장 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
획,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시설·

6. 교육사업 추진, 교
육경비보조금 지원,
평생교육,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운영, 청
소년 교육센터 운영,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
영 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개정안과 같음)

법인 관리, 지역
복지욕구조사,
복지서비스 연
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
원, 지역보호체
계, 통합사례관
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
약계층 지원, 의
료급여, 자활지
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장애
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영유
아 보육사업, 출
산장려,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
한 사항

5. 아동복지, 청소
년 지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도시안전과·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제8조(도시환경국) ① -

----- 주택상생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제8조(도시환경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2. (생략)

3. 건축행정, 건축 허가·착공·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감독, 위법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안전정책 총괄
· 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옥외 광고물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 건축물 철거,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 도시디자인, 건축 안전-----

<삭 제>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5.·6. (개정안과 같음)
제9조(교통건설국)	제9조(교통건설국) ① -	제9조(교통건설국) ①
① 교통건설국에 <u>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도로과·치수과</u> 를 둔다.	----- <u>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u> ----- -----.	(개정안과 같음)
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② (개정안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도로·지하도·하천·구거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u>토지의 사용·수용, 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u>	3. ----- ----- ----- <u>도로의 사용·수용·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 옥외광고물관리</u> ----- ----	3. (개정안과 같음)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4.·5.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설치) ----- ----- - <u>제126조</u> -----	제10조(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113조와 「지역
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
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
소를 설치한다.

제12조(직제 및 업
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위생
과·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
11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에 규정
된 소관사무와 식
품 및 공중위생업
소 허가·지도감
독, 농·수·축산
물의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한
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

-----.

제12조(직제 및 업무) ① ----- 보건행정
과·위생과·건강동행
과·의약과-----.

② -----

----- 안전관리, 출산장
려-----.

제13조(설치) ① 법 제1
27조----- 도서관 --

제12조(직제 및 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
27조----- 도서관 및

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 17 조 (관 할 구 역)
법 제 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동의 명칭
과 관할구역, 그리
고 법 제 4 조 의 2 제 4
항에 따른 행정동
의 관할구역은 이
를 따로 조례로 정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 17 조 (관 할 구 역) 법 제
7 조 제 1 항-----

법 제 7 조 제 4 항-----

-----.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 2 조 (소 관 사 무 에 대 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른 구분청·보
건소·사업소의 담당
관·국·과의 소관사

청소년교육센터-----

-----.

② (개정안과 같음)

제 17 조 (관 할 구 역) (개 정
안과 같음)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 2022년 10
월 7일-----.

제 2 조 (소 관 사 무 에 대 한
경과조치) (개정안과
같음)

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분청·보건소·사업소의 담당관·국·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장”으로, 제6조 중 “자치행정팀장”을 “동행정팀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성 및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
리국장”을 “행정지원국
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
구 상징물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관
리국장”을 “행정지원국
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
지원국장”으로 하며, 제
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총무팀장”을 “행정지원
팀장”으로 하고, 별표2
의 “행정민원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
다.

10. 「서울특별시 마
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5조의2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자원재활용팀장”을 “재활용관리팀장”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

11.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 환경과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행정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복지동행국장”-----.

14. (개정안과 같음)

15. (개정안과 같음)

관리국장”을 “도시환경
국장”으로, “청소행정과
장”을 “자원순환과장”으
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교육
지원과장”을 “디지털재
정과장, 교육정책과장”
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
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
지원국장”으로 하고, 별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가. 별표1의 자연재난분
야 1, 2의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하고, 3의
“도로과”를 “도로개선
과”로, 4, 5의 “도시환경
국”을 “행정지원국”으
로, 6의 “환경과”를 “맑
은환경과”로 하고, 별표
1의 사회재난분야 1의
“도로과”를 “도로개선
과”로, 2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7의
“환경과”를 “맑은환경

16. 「서울특별시 마
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안과 같음)

과”로, 9의 “행정관리국”을 “재정관리국”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10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1의 “행정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13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4의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나. 별표2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복지정책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주택과”

나.-----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9조 중 “기

17. (개정안과 같음)

18. (개정안과 같음)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획예산과장”을 “디지털 재정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7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아동청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교육지원과장 및 아동청년과장”을 “교육정책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복지동행국장-----

-----.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 복지동행국장 -----

-----.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 중 “교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제4조 중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을 “재정관리국장과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5조제8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 동행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아동청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제8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

-----.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
국장-----

--.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

동행국장”으로 한다.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

장-----.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국장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동행
국장-----

41. (개정안과 같음)

국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팀장”을 “경제총괄
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
진흥과장”으로, 제7조제
4항 중 “지역경제과 지
역경제팀장”을 “경제진
흥과 경제총괄팀장”으
로, “지역경제과”를 “경
제진흥과”로 한다.

42. 「서울특별시 마
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일
자리국장”을 “관광경제
국장”으로 한다.

43. 「서울특별시 마
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광일
자리국장”을 “관광경제
국장”으로 한다.

44. 「서울특별시 마
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42. (개정안과 같음)

43. (개정안과 같음)

44. (개정안과 같음)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광일자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을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4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

45. (개정안과 같음)

46. (개정안과 같음)

47. (개정안과 같음)

국장”으로 하고, 제17조 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48. (개정안과 같음)

49. (개정안과 같음)

50. (개정안과 같음)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

51. (개정안과 같음)

52. (개정안과 같음)

53. (개정안과 같음)

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제7조제3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3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생활복

54. (개정안과 같음)

55. (개정안과 같음)

지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10조제5항 중 “도시안전과”를 “구민안전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한다.

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장애인동행과장·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 재난안전팀장”을 “구민안전과 안전총괄팀장”으

56. (개정안과 같음)

57. (개정안과 같음)

로 한다.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 도시안전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보행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여성정책팀장”을 “양성평등정책팀장”으로 한다.

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문화예

58. (개정안과 같음)

59.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술과”를 “문화누리과”로 한다.

61.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
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7조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3조제2항제4호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5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6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0. (개정안 제61호와
같음)

61. (개정안 제62호와
같음)

6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6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3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4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62. (개정안 제62호와 같음)

63. (개정안 제64호와 같음)

64. (개정안 제65호와 같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제8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5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과장”을

65. (개정안 제66호와 같음)

66. (개정안 제67호와 같음)

67. (개정안 제68호와 같음)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6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7조 중 “운수관리팀장”을 “운수질서관리팀장”으로 한다.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팀장”을 “식품행정팀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정복지과

68. (개정안 제69호와 같음)

69. (개정안 제70호와 같음)

70. (개정안 제71호와 같음)

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조경팀장”을 “가로정원팀장”으로 한다.

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과”을 “체육진흥과”로 한다.

71. (개정안 제72호와 같음)

72. (개정안 제73호와 같음)